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 안 이 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용어·체계 및 지정 취지에 맞춰 우리 시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개념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2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3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관리)”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리)”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응급실과 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관리) ①·② (생략)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삭 제>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

관 계 법 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것
2. 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추어 것
3.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 소아환자 진료 실적

3. 운영계획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1.]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김 현 미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시행 2025. 4. 9.]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742호, 2025. 4. 9.,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감염병관리과), 044-300-68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4. 9.>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관리) <개정, 2025. 4. 9.>

-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